

## 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주)

###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모비우스200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2. 신탁계약서 변경 시행일

- 2021년 3월 23일

### 3. 변경사유

- 환매수수료 폐지

### 4. 신탁계약서 변경내용

항목	현행	개정	
제3조(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등)	~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 자격	판매수수료부과 여부 (제38조 참조)
	1.C클래스 수익증권	(생략)	없음
	2.A2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3.A1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4.A-H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5.A-E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6.C-D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7.C-W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8.C-F클래스		없음	
~②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 자격	판매수수료부과 여부 (제38조 참조)	
1.C클래스 수익증권	(현행과 같음)	없음	
2.A2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3.A1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4.A-H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5.A-E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6.C-D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7.C-W클래스 수익증권		없음	
8.C-F클래스		없음	

	<table border="1"> <tr> <td>수익증권</td> <td></td> <td></td> <td></td> </tr> <tr> <td>9.AG클래스 수익증권</td> <td>(생략)</td> <td>있음</td> <td>있음</td> </tr> <tr> <td>10.S클래스 수익증권</td> <td></td> <td>있음 (제38-1조 참조)</td> <td>있음</td> </tr> </table>	수익증권				9.AG클래스 수익증권	(생략)	있음	있음	10.S클래스 수익증권		있음 (제38-1조 참조)	있음	<table border="1"> <tr> <td>수익증권</td> <td></td> <td></td> <td></td> </tr> <tr> <td>9.AG클래스 수익증권</td> <td>(현행과 같음)</td> <td>있음</td> <td>(삭제)</td> </tr> <tr> <td>10.S클래스 수익증권</td> <td></td> <td>있음 (제38-1조 참조)</td> <td></td> </tr> </table>	수익증권				9.AG클래스 수익증권	(현행과 같음)	있음	(삭제)	10.S클래스 수익증권		있음 (제38-1조 참조)	
수익증권																										
9.AG클래스 수익증권	(생략)	있음	있음																							
10.S클래스 수익증권		있음 (제38-1조 참조)	있음																							
수익증권																										
9.AG클래스 수익증권	(현행과 같음)	있음	(삭제)																							
10.S클래스 수익증권		있음 (제38-1조 참조)																								
<p><b>제39조 (환매수수료)</b></p>	<p>① C, C-D, C-W, C-F, AG, S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0일미만 : 이익금의 70%</li> <li>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li> </ol> <p>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자들에게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p>	<p>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불구하고 A1,·A2,·A-H,·A-E클래스 수익증권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C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03.23)	(신설)	<b>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b>